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소음대책 지정·고시 주기 단축, 소음대책사업
대상 확대 및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범위 확대 등 〉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308호)

2024. 8.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관 현 준

목 차

□ 이 용 선 의 원 대 표 발 의 (2200308)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3
1.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 단축(안 제5조)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4
1) 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	6
2)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9
2. 소음대책사업 대상 확대 등(안 제8조)	10
가. 개정안의 내용	10
나. 검토의견	12
1)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 하한 명시 및 지원대상 확대 (안 제8조제1항제3호)	12
2) 소음대책사업 종류에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사업 추가 (안 제8조제1항제5호)	15
3. 주민지원사업 종류 구체화 및 사업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19조)	18
가. 개정안의 내용	18
나. 검토의견	19
1)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직업훈련 지원 명시(안 제19조제1항제2호)	19
2)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19조제2항)	20

다. 관계기관 의견	23
1) 국토교통부	23
2) 한국공항공사	24

□ 이용선의원 대표발의(2200308)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이용선의원 등 12인
2. 제 안 일 : 2024. 6. 11.
3. 회 부 일 : 2023. 6. 12.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94년부터 주요공항(6개)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소음으로 인하여 주변 주민이 겪고 있는 소음피해에 대한 지원의 규모·대상이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피해 주민들이 받는 고통에 비해 여전히 지원 규모가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항공수요의 변화에 대응한 소음대책사업이 시행되도록 소음 대책지역의 지정·고시 주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전기료 지원을 영세 사업장까지 확대하고 지원 기간을 5개월 이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또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 신설, 주민지원사업 지원 확대,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도록 함(안 제5조제1항).

나. 소음대책지역의 전기료 지원을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해 5개월 이상 지원하고,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신설하도록 함(안 제8조제1항).

다.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범위를 사업비의 90%로 확대하고, 소득증대 사업에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함(안 제19조제1항 및 제2항).

Ⅲ. 검토의견

1.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 단축(안 제5조)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¹⁾은 공항소음대책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의 대상이 되는 소음대책지역의 지정을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도록 하고, 그에 필요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²⁾은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토교통부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 영향구역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만 소음대책지역 변경고시를 하고 있음.

반면,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 주기를 3년으로 법률에서 명시하여 단축하려는 것임.

1)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개정안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 ⑥ (생략)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 ----- ----- ----- 3년 마다 제1종----- -----. ② ~ ⑥ (현행과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현행법³⁾은 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를 규정하면서 그 주기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고, 소음대책지역 지정을 위하여 소음영향도를 조사하도록 하면서 그에 필요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동법 시행령⁴⁾은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를 5년으로 규정하고 있음.

3)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장래의 항공수요를 고려한 예상 소음영향도를 기준으로 공항주변의 소음대책지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종 구역, 제2종 구역 및 제3종 구역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을 지정·고시하기 위하여 공항소음으로 인한 공항주변의 소음영향도를 조사하여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방법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제4항에 따른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후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하며,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는 원칙적으로 5년마다 시행되고,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는 그 소음영향도 조사에 따라 영향구역 변경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고시가 이루어지므로 그 주기가 지나치게 길어 지정된 소음대책지역이 급변하는 환경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실제 공항소음 피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 소음대책지역 지정 고시일 현황 】

구 분	인천	김포	김해	제주	울산	여수
최초고시	2010.11.30.	1993.06.21.	1994.09.01.	1993.07.01.	2006.12.05.	2006.12.05.
변경고시	2016.01.06.	2010.10.08.	2004.10.25.	2008.1.29.		
		2017.06.30.	2014.02.07.	2012.12.27.		
			2020.12.24.	2018.05.29.		
	2023.01.01.	2023.01.01.	2023.01.01.	2023.01.01.	2023.01.01.	2023.01.01.

* 소음영향도 조사는 매 5년마다 실시하나, 영향구역 변경이 없을 경우 변경 고시를 하지 않음

자료 : 국토교통부

개정안은 소음대책지역을 3년마다 지정·고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는바,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도 3년이내가 되어야 할 것이며, 현재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는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으므로 대통령령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이처럼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및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단축하여 실제 공항소음 피해를 반영한 소음대책지역 지정 및 사업을 통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1) 주기 단축에 대한 검토

①개정실익에 대한 검토

현행 시행령⁵⁾은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를 원칙적으로 5년으로 규정하면서 동시에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는 동 제도에 따라 환경이 급변하는 경우에도 실제 공항소음 피해를 파악하여 조정이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단축하는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다만, 2024년 8월 현재를 기준으로 볼 때 동 제도에 따라 수시 조사가 이루어진 경우는 지난 2023년 1월 1일 소음영향도 단위(웨클→가중등가소음도)가 변경됨에 따라 이에 맞춰 소음영향도 조사가 이루어진 한 차례밖에 없어 동 제도의 실효성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음.

이에 시행령에서 수시 조사를 위한 요건을 완화하거나 법률로 상향규

5)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음대책지역의 지정·고시) ⑫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항에도 불구하고 항공수요의 급변 또는 공항운영 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 전이라도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기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할 수 있다. 이 경우 타당성 검토 결과 기존 지정·고시를 변경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타당성 검토 종료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소음영향도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정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그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실제 공항소음 피해를 반영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달성을 도모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②대상지역 주민 혼란 발생 가능성

소음대책지역의 경계 지역과 같이 소음대책지역 포함·제외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지역의 경우, 개정안과 같이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명시·단축하면 주민들의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기존에는 소음대책지역에 포함되는 경우 현행법령에 따르면 최소 5년간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등과 같은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3년으로 그 주기가 단축되면 3년 만에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어 지정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일본 항공환경연구센터에서 발간한 해외공항의 환경대책 2020(항공환경연구 특별호)⁶⁾에 따르면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등에서도 5년마다 소음지도를 작성하는바, 해외의 경우에도 소음영향도 조사 주기가 5년에 이르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참고2. 해외공항의 환경대책 2020(항공환경연구 특별호, 일본 항공환경연구센터 발간) 中 소음지도 작성 주기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하여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주기를 3년으로 명시하여 단축하는 경우 소음대책지역의 신규 지정 또는 해제가 빈번해짐에 따라 주민 혼란, 민원 발생 우려가 있다는 의견임.

③행정력 소요 및 유관계획과의 정합 필요성에 대한 의견

현재는 소음영향도 조사 결과에 따라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변경 고시를 하고 있으나, 개정안에 따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의 주기가 3년으로 명시되는 경우 3년마다 지정·고시가 새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맞춰 소음영향도 조사의 주기(현행 시행령에 따른 경우 5년)도 단축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 및 한국공항공사는 소음영향도는 5년 단위 계획인 공항개발 종합계획⁷⁾ 상 항공수요를 고려하여 산정되고, 그 산정을 위하여 연구용역 발주 및 수행이 필요하며, 소음영향도 조사 이후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위하여 주민 공람, 행정기관 협의 등 행정력 소요가 요구된다는 설명으로 지정·고시 주기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7) 「공항시설법」

제3조(공항개발 종합계획의 수립)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항개발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항개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항공 수요의 전망

2) 법률 개정 필요성에 대한 검토

법 제5조제1항은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를 규정하면서 그 주기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있으나, 그 지정·고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정·고시의 주기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3년으로 규정하는 것은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 가능할 것으로 보임.

관련하여 법무부는 법 제5조제1항은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고시 주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소음대책 지역의 지정·고시 주기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에 의하여도 개정이 가능하므로, 법률에 상항하여 개정하는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소음대책사업 대상 확대 등(안 제8조)

가. 개정안의 내용

현행법은 소음대책사업의 종류 중 하나로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고, 그 대상으로 학교,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그리고 노유자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⁸⁾은 냉방시설 전기료를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 동안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을 현행 법령에 따른 4개월에서 5개월로 연장하고, 지원대상에 영세사업장을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또한, 개정안은 소음대책사업의 종류의 하나로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새로이 추가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8)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냉방시설 전기료의 지원범위: 6월부터 9월까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지원할 것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는 학교별로 월 500만원. 다만, 학교에 병설된 유치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학교와 유치원을 하나의 지원 단위로 보아 학교에 대해서만 월 5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한다.

나. 제5조제1항의 주민 주거용 시설(이하 “주민 주거용 시설”이라 한다)은 세대별로 월 5만원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은 시설별로 월 60만원

현행	개정안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2. (생략)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가. ~ 다. (생략) <신설> 4. (생략) <신설> 6.·7. (생략) ② ~ ⑤ (생략)	등) ① ----- ----- ----- ----- --- 1.·2. (현행과 같음) 3. ----- ----- ----- -- 한정하여 5개월 이상 지원한다- 가. ~ 다. (현행과 같음) <u>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장</u> 4. (현행과 같음) <u>5.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u> 6.·7.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 하한 명시 및 지원대상 확대 (안 제8조제1항제3호)

소음대책지역의 경우 공항소음으로 인해 창문을 닫고 생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을 고려하여 공항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고 있음.

동법 시행규칙은 이러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을 6~9월, 4개월로 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온 등을 고려하여 지원기간을 확대하려는 취지로 보임.

특히, 기사⁹⁾에 따르면 기상청은 이상고온과 극단적 폭염·폭우가 발생하는 현실을 고려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여름을 포함한 계절별 길이 전반을 재설정하는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는 점에서 이는 타당한 측면이 있음.

9) 조선일보, [단독] 5월도 9월도 '여름' 된다...기상청장 "사계절 재설정 논의", 2024.7.3.

“장동연 기상청장은 이날 본지에 “이상고온과 극단적 폭염·폭우가 발생하는 ‘혹독한 여름’이 길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각계 전문가와 함께 여름을 포함한 한반도의 계절별 길이 전반을 재설정하는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계절이 뚜렷했던 우리나라는 봄(3~5월), 여름, 가을(9~11월), 겨울(12월~이듬해 2월)이 각각 3개월씩을 차지했다. 여름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런 사계절 패턴의 붕괴를 공식화하는 것이다. 계절 길이를 조정하는 것은 근대 기상관측이 시작된 1907년 이후 117년 만의 첫 시도다.”

https://www.chosun.com/national/transport-environment/2024/07/03/I3R2IGIQWRGQRJN5DIIWZ33HAI/?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다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기간은 현재 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바, 부령의 개정으로 그 취지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측면이 있음.

법무부는 현행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5항¹⁰⁾은 냉방시설 전기료 일부 지원 기간 등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어 상황에 따라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기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령에 의하여도 개정이 가능하므로, 법률에 상항하여 개정하는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한편, 국토교통부는 이에 대하여 현재 하계로 분류되는 3개월(6~8월)에 더하여 1개월(9월)을 추가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므로, 현행 지원수준으로 충분하다는 의견임.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영세사업장에 대한 지원이 추가되지 않는 경우에도 현행 4개월 지원에서 5개월 지원으로 전기료 지원기간을 확대하는 경우 연간 약 48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재원 소요가 발생할 것으로 추계하였음.

10)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⑤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전기료 지원기간 확대(4 → 5개월) 시 추가 재원소요 추계 】

구 분	4개월 지원	5개월 지원	비 고
학교	953백만원	1,191백만원	'23년 지원액 기준
일반주민	18,154백만원	22,693백만원	고시된 세대 지원 기준
노유자시설	230백만원	288백만원	'23년 지원액 기준
공동이용시설	98백만원	122백만원	-
합 계	19,435백만원	24,294백만원	증 4,859백만원/년

자료 : 국토교통부

다음, 안 제8조제1항 제3호 라목은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에 영세사업장을 추가하려는 것인데, “공향소음대책사업”이란 공향소음을 줄이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현행법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학교, 주거시설 등¹¹⁾ 비영리 시설에 대하여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바, 소음대책지역 내 영세사업장의 냉방시설 전기료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로 보임.

그러나 개정안에 따라 추가되는 지원대상인 영세사업장의 경우 영리시설로서 현행법에 따른 지원대상(학교, 주민 주거용 시설, 주민 공동이용시설, 노유자시설)과 그 성격이 다소 상이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1)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공향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향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시설관리자로 한정한다)

가. 「교육기본법」 제9조에 따른 학교

나.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호에 따른 시설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민 주거용 시설 및 주민 공동이용시설

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1호에 따른 노유자(老幼者)시설

국토교통부는 현재 영세사업장이 많은 근린생활시설·업무시설·동식물관련시설 중에서 소음피해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주거 용도에 한하여 전기료를 지원 중이고, 영리 목적의 영세사업장은 공항소음에 민감한 주거용 시설이 아니며,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환경 보장을 위한 본래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

소음대책지역 내 거주 주민에게 지원하는 전기료를 영리 목적의 영세사업장까지 확대하는 것은 형평성 우려 등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또한, 한국공항공사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대상의 지속적인 확대로 소음대책 재원 중 전기료 지원 사업비 비중이 높아 지원기간 및 지원대상 추가 확대 시 방음 및 냉방시설 설치 등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보다 안정적인 법정사업의 추진을 위해 사업의 확대 및 신설 등은 추가 소요 재원 조달 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임.

2) 소음대책사업 종류에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사업 추가(안 제8조제1항제5호)

안 제8조제1항제5호는 소음대책사업의 일환으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 사업을 수행하도록 새로이 규정하려는 것인데, 지속적인 공항 소음에의 노출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개연

성이 있다는 점에서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소음대책사업에 포함시켜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바람직한 것으로 보임.

다만, 현행법은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로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주민복지사업을 규정하고, 동법 시행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주민복지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¹²⁾, 현행법에 따르는 경우에도 건강증진 및 의료지원사업을 주민지원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음.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예컨대 서울시 양천구와 경기도 부천시 등 주민지원사업으로 청력정밀검사, 보청기 등을 지원하는 등 건강증진·의료

12)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복지사업: 공동이용시설(도서관, 체육공원 등) 설치, 교육문화사업 등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소득증대사업: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그 밖에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공향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7. 7. 17.>

법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지원비율
(제12조제1항 관련)

구분	사업종류	세부내용	지원비율
1. 주민 복지 사업	가. 사회복지사업	노인복지회관, 마을회관, 양로시설, 경로당, 아동상담소, 아동복지관, 어린이집, 종합복지관,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 또는 영양취약계층 급식비 지원	75/100
	나. 체육사업	체육공원 등 체육 관련 시설 또는 어린이 놀이터의 설치	75/100
	다. 교육문화사업	도서관 또는 교육·문화 관련 시설의 설치	75/100
	라. 그 밖의 사업	국토교통부장관이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5/100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설명임.

【 2023년도 건강·의료지원 실적(주민지원사업-주민복지사업) 】

(단위 : 백만원)

공항	지자체	세부 사업내역	총사업비	지원금액	지자체
김포	양천구	공항소음피해지역 주민 청력정밀검사지원	100	65	35
	부천시	공항소음피해지역 청력정밀검사 등 지원	100	65	35
여수	여수시	의료비(종합건강검진)	21.6	14	7.6

자료 : 국토교통부

한편, 법 제8조에 따른 소음대책사업은 방음시설·냉방시설 설치, 공영방송 수신료 지원,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 자동소음측정망 설치 등 공항소음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는바, 만일 개정안과 같이 소음대책사업으로 이와 같은 사업을 추가하려는 경우 역학조사를 통하여 공항소음이 주민들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입증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이와 관련한 역학조사가 이루어진 사례가 미흡한 현실이라는 설명임.

3. 주민지원사업 종류 구체화 및 사업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19조)

가. 개정안의 내용

법 제19조는 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및 사업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안 제19조제1항제2호는 직업훈련 지원을 주민지원사업의 예시로 명시하여 추가하려는 것임.

그리고 법 제18조제5항13)에 따를 때 주민지원사업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는바, 사업비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일 것이나, 현행 제19조제2항은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의 75% 이하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지원하도록 하고 있는데, 안 제19조제2항은 그 사업비 지원범위를 90% 이하로 확대하려는 것임.

< 주민지원사업비 부담 >

현행	시설관리자 등 (양 공항공사) (75%)	주민지원사업 시행자 (시·군·구청장 등) (25%)
개정안	시설관리자 등 (양 공항공사) (90%)	시·군· 구청장 등 (10%)

13)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주민지원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략) 2. 소득증대사업: <u>공동작업장</u>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 등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생략) ②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 호의 사업별로 드는 사업비의 100분의 <u>75</u>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주민지원사업 시행자에게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생략)	제19조(주민지원사업의 종류 등) ① -- ----- -----. 1. (현행과 같음) 2. -----<u>직업훈련 지원, 공동작업장</u>----- ----- -----. 3. (현행과 같음) ② ----- ----- -----<u>90</u>을----- ----- -----. ③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 1)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직업훈련 지원 명시(안 제19조제1항제2호)
- 안 제19조제1항 제2호는 주민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으로 직업훈련 지원을 명시하여 추가하려는 것임.

“주민지원사업”이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 및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직업훈련 지원 사업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이 기대되므로 주민지원사업으로서 직업훈련 지원을 추가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다만, 주민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은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므로,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 개정을 통해서도 취업지원을 그 종류의 하나로 추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2)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범위 확대(안 제19조제2항)

현행법에서는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 및 사업 지원에 관한 내용을 나누어 각각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제23조,¹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경우 제24조¹⁵⁾를 적용하고 있음.

14) 제23조(자금) ①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조성하여야 한다.

1. 정부의 국고지원금
2.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소음부담금
3. 시설관리자 및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사업비. 다만, 시설관리자의 경우에는 「공항시설법」 제32조에 따른 사용료 등 공항수익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항수익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1. 공항소음대책사업
2. 주민지원사업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15) 제24조(공항소음대책사업 등의 본인 부담 시행)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이 아닌 본인의 자금으로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항소음대책사업은 승인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을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날부터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에 따라 시행하지 아니할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에 한국공항공사의 경우 제23조에 따라 정부의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등이 부담하는 사업비로 조성된 자금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배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제24조에 따른 자체자금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배분하고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면 한국공항공사(시설관리자 등)가 주민지원사업 사업비의 75%의 범위 내에서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음.

안 제19조제2항은 제23조에 따라 조성된 자금의 지원비율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한국공항공사가 적용대상이 되는데, 이는 시설관리자 등과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주민지원사업의 사업비 중 한국공항공사의 지원비율을 현행 최대 75%에서 90%로 확대하려는 것으로, 주민지원사업은 공항의 운영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취지의 타당성은 인정됨.

앞서 설명하였듯이 시설관리자 등에 해당하는 한국공항공사는 국고지원금, 소음부담금, 시설관리자 등이 부담하는 사업비로 조성된 자금을 공항소음대책사업 및 주민지원사업에 배분하여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

이에 한정된 예산 내에서 개정안과 같이 주민지원사업 사업비의 최대 90%를 시설관리자 등인 한국공항공사에게 부담하도록 할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주민지원사업비만큼 공항소음대책사업비가 감소하거나 주민지원사업 건수가 감소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현행 구조의 변경이 바람직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 증가에 따른 변경 가능성 】

자금(재원) (법 제23조제1항)	지출(사업) (법 제23조제2항)		
국고지원금	공항소음대책사업 ↓	또는	공항소음대책사업
소음부담금			주민지원사업
착륙료 수익의 75%	주민지원사업 ↑		- 금액 ↑ - 건수 ↓

참고로, 현행 체계에 따른 주민지원사업 실적을 살펴보면, 약 100억원(75%) 시설관리자 등, 즉 한국공항공사에서 부담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약 1/3인 33억원(25%)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개정안에 따라 최대 90%를 한국공항공사가 부담하게 되는 경우 ①현행 주민지원사업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약 20억원 정도를 한국공항공사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하여야 하므로 그에 따라 공항소음대책사업이 그만큼 감소할 수 있고, ②공항소음대책사업을 감소시키지 아니하는 경우 주민지원사업 건수를 그만큼 감소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최근 3년간 주민지원사업 실적 】

구 분	'21년	'22년	'23년
주민지원사업 실적 (한국공항공사 부담액, 현 75%)	9,994백만원	9,993백만원	9,960백만원
지자체 부담액 25% 추정	3,331백만원	3,331백만원	3,320백만원

자료 : 국토교통부

다. 관계기관 의견

1) 국토교통부

주민지원사업으로 직업훈련 지원을 명시하는 것은 직업훈련 지원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과 능력 습득으로 전문성이 향상되고, 양질의 직업 기회로 가계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바,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동의하는 입장임.

한편, 주민지원사업 사업비 지원비율 확대는 한정된 재원으로 인하여 타 사업(방음·냉방시설 설치, 전기료 지원 등)이나 주민지원 사업수 축소 등 사업간 형평성 문제 및 주민 반발이 우려되며, 지자체의 최소한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적정한 지원비율 운영이 필요하고, 보조금법에 따른 유사 사업들도 보조비율이 최대 75% 수준으로 현행 지원비율(최대 75%)을 유지할 필요가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또한, 공모를 거쳐 시설관리자(공항공사)가 주민지원사업을 직접 시행 시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법이 개정·시행됨('24.2.)¹⁶⁾에 따라 49건의 사업이 접수되어 서면심의 및 대면심의를 거쳐 8월 현재 14건(사업예산 총 12억원, 건별 기준금액 5천만원~1억 5천만원)의 사업이 선정된바, 그 효과¹⁷⁾를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2) 한국공항공사

공동작업장 및 공동영농시설의 설치와 비교하여 직업훈련 지원은 소득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체계상 본문에 직접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한 것으로 보이며, 필요한 경우 시행령 별표1에 따라 그 밖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개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의견임.

또한, 주민지원사업비 지원비율 확대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감소하는 효과는 있으나 전체적인 주민지원사업비의 축소와 사업 추진 건수가 감소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소음대책 및 인근지역 주민들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며,

16)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등) ⑤ 주민지원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교육감(학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에 한정한다)이 시행한다. 다만, 공모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개정2023. 8. 16.>

17) 24년 7월 현재 49건의 사업이 접수되었으며, 서면심의 및 대면심의를 거쳐 8~24건(사업예산 총 12억원, 건별 기준금액 5천만원~1억 5천만원)의 사업이 선정될 것으로 보임.

법 제4조에 따라 국가, 공항시설관리자 외에 지방자치단체도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책을 수립·시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분담비율 확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580

15p.

4.2. 유럽(EU)

EU에서는 EU Directive 2002/49/EC(Environmental Noise Directive : END)라는 환경소음의 평가와 관리에 관한 법령이 있다. 이것은 ①환경소음의 노출상황 파악, ②환경소음과 그 영향의 공개, ③ 소음 경감 및 양호한 환경 유지로 구성된다. 평가지표는 24시간을 대상으로 하는 L_{den} 과 야간을 대상으로 하는 L_{night} 두 종류이다. 참가국은 도로, 철도, 공장, 항공의 소음원별로 소음 크기별 영향 면적 및 인구를 5년마다 소음지도와 함께 보고한다. 또한, L_{den} 55dB 이상, L_{night} 5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을 줄이기 위한 실행계획(action plan)을 작성해야 한다. 공항은 연간 이착륙 횟수 50,000회 이상의 주요 공항이 대상이다.

4.3. 영국

END를 영국 국내법으로 편입시킨 법률(The Environmental Noise (England) Regulations 2006)에 의거하여 영국 전체적으로 소음 저감에 힘쓰고 있다. 히드로공항회사(HAL)는 END에 따라 소음대책계획(Noise Action Plan: NAP)을 작성하였다. 최신 계획은 Noise Action Plan 2019 – 2023이다. 또

15

특별호 '해외공항의 환경대책'(2020)

한 CAA(영국 민간항공관리국)에서는 END의 5년간격의 의무 이상으로 매년 소음 등고선을 공개하고 있다. 영국의 EC 이탈이 결정되었지만, 이탈 후에도 END와 동등한 환경 관리를 계속할 것이라고 HAL은 밝혔다.

17p.

4.5. 프랑스

프랑스에서도 EU Noise Directive 2002/49/EC를 국내 시행령에 반영한 n° 2006-361이 적용되었다. 5년 간격으로 L_{den} 과 L_{night} 의 소음이 예측되며, 다른 교통소음도 포함한 소음지도 및 실행계획이 수립되었다.

18p.

4.7. 스페인

스페인에서도 EU Noise Directive 2002/49/EC에 의거한 국내법(Lay 37/2003 on Noise)이 있고, L_{den} 55dB와 L_{night} 5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소음지도와 소음문제 해결을 위한 실행계획 작성의무가 있다. 이 스페인 소음법(Lay 37/2003 on Noise)과 Royal Decree 1367/2007에 따라 소음에 따른 토지이용계획(Easements for Land use planning)을 수립하고, 소음구역을 지정하여 소음대책계획(Noise Action Plan: NAP)을 실시한다.

19p.

4.8. 이탈리아

이탈리아도 EU 가입국이며, 2002년 EU Noise Directive 이래, 5년마다 소음지도와 소음 저감을 위한 실행계획작성의무가 있다.

131p. 독일

5. 공항 주변 환경대책

5.1. 평가지표와 기준

독일에서는 환경청이 EU Directive 2002/49/EC(END:유럽환경지령)에 따라 L_{den} 55dB와 L_{night} 50dB 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인구를 줄이기 위해 5년마다 소음지도를 제작하는 외에 소음절감목표치를 주간과 야간의 L_{Aeq} 로 제시하고 있다(예를 들어, 최소 목표치로서 $L_{Aeq,day}$ 65dB, $L_{Aeq,night}$ 55dB, 중간 목표로서 각각 55dB, 45dB 등).

자료 : 국토교통부